

「2025년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

화성지역 소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특화하고 기업성장 로드맵 구축을 위한 『맞춤형 컨설팅 지원』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05월 09일

화 성 상 공 회 의 소

1. 사업개요

가. 사 업 명 :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

나. 사업목적 : 소공인의 기술력을 특화하고 기업 성장 로드맵 구축

다. 사업기간 : 2025. 05. 09. ~ 10. 31. (사업비 소진 시까지)

라. 사업내용 : 컨설턴트가 업체로 방문하여 컨설팅 및 완료보고서 제공

- 소공인 기술개선 및 국내·외 인증 취득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
- 근로 계약서 및 회사 규칙 등 인사·노무 관련 컨설팅 지원
- 소공인 제품 마케팅 및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
- 소공인 업체 재무상태 종합 분석 및 재무 프로그램 교육 컨설팅 지원
- 소공인 수출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 컨설팅 지원
- R&D 사업 정보, 사업계획서 대면평가 등 컨설팅 지원
- 특허·산업재산권 및 기타 법률 분야 컨설팅 지원

○ 컨설팅 세부 분야

컨설팅 분야	세부분야
기술·인증	품질개선, 재고·유통관리, 스마트공장, 육성정책수립, 3정5S, 산업안전, 4차산업(IOT,인공지능), 국내·외 인증, 환경영향평가 등
인사·노무	근로계약서 제·개정, 임금체계 진단, 노동관계법령 준수여부 및 교육, 채용관련 정부지원정책 등
마케팅	연구소 설립, B2B마케팅 전략, 수출 전략, 신규시장 예측, 고객관리, 조달, 판로개척, 브랜드 전략 등
재무	재무제표 작성, 프로그램 교육, 공제혜택, 원가 및 판관비 추정, 수익성개선 활동, 절세전략, 정책자금 등
수출지원	목표시장 탐색, 경쟁제품 동향조사, 파트너·바이어 발굴·탐색, 수출일체의 서류 작성 지원, 법률·세무·통역 지원 등
R&D	자체 제품 사업화, 실현가능성 및 시장전망, 사업계획서 작성, 정부지원과제 탐색, 대면평가 멘토링 R&D 교육 등
특허	특허출원, 산업재산권 절세/자본화 전략, 기타 법률 지원 등

○ 컨설팅 완료보고서 주요내용

항목	주요내용
I. 컨설팅 추진배경 및 필요성	1. 업체 현황 2. 업체 진단 결과 및 컨설팅 필요성
II. 컨설팅 추진 대상 및 범위	1. 컨설팅 대상 및 범위 2. 컨설팅 성과목표
III. 현황 및 여건 분석	1. 업체 대상 분야 현황 2. 업체 시장성 분석(SWOT 분석 등)
IV. 추진전략구상	적용부문 로드맵 제시
V. 세부시행계획	세부 사업계획 제시
VI. 결론 및 시사점	1. 성과목표 달성 정도 2. 기대 효과 3. 종합결과(향후 과제, 사후관리 계획포함)

2. 세부 내용

가. 지원 내용

- 지원규모 : 21개사
- 지원대상 : C22,C24~C31업종 10인 미만 소공인(일부지역 제외)

산업분류코드	주요업종	산업분류코드	주요업종
C22	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	C28	전기 장비 제조업
C24	1차 금속 제조업	C29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C25	금속가공	C30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C26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31	기타 운송장비 제조업
C27	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	

※ 동탄 1~9동, 병점동, 진안동, 반정동, 반월동, 기산동 지역 제외

- 지원방법 : 컨설턴트가 업체로 방문하여 컨설팅 지원
(1일 4시간씩 4회, 총 16시간)

※ 1개사 당 160만원 상당의 컨설팅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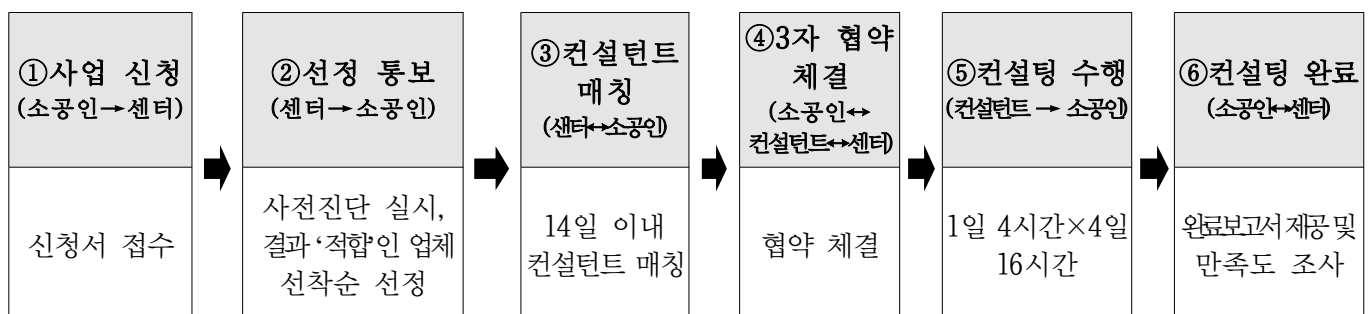
※ 컨설턴트에게 사업비 직접 지급 (수혜업체 별도금액 지원 없음)

- 모집기간 : 연중상시 (사업비 소진 시까지)
- 지원업체 선정 기준 : 사전진단 결과 ‘적합’인 기업 선착순 선정
(사전진단 보고서 체크리스트 60점 이상인 경우 적합)

- 지원업체 선정 통보 :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기업 통보

※ 선정평가 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음

나. 지원 절차



다. 세부 추진 절차

절차	업무	세부내용
①	사업 신청	- (소공인) 신청서, 추진계획서 등 서류 준비·작성하여 제출 - (센터) 서류 접수 및 검토
②	선정 통보	- (센터) 사전진단결과와 '적합'인 기업 선착순 선정 - (센터→소공인) 선정 소공인 대상 컨설팅 관련 개별 안내
③	컨설턴트 매칭	- (센터↔소공인) 선정 대상 소공인과 센터간에 협의하여 컨설턴트 Pool 정보를 바탕으로 14일 이내 최종 1명 선정 - (센터→컨설턴트) 컨설팅 의뢰 요청 - (소공인↔컨설턴트) ·컨설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전 준비자료 안내 및 방문 일정 조율
④	3자 협약 체결	- (소공인↔센터↔컨설턴트) ·컨설턴트의 현장방문으로 기업현황 파악 및 협약 체결 ·컨설팅 본 수행 전 3자 협약 체결 ·협약서, 컨설팅 수행 계획서, 성실이행서약서 작성
⑤	컨설팅 수행	- (컨설턴트→소공인) 현장 진단 및 컨설팅 수행 (컨설턴트 선정 후 2개월 이내 완료) ·현장진단 및 애로사항 파악 ·컨설팅 세부사항 및 실무 논의 ·컨설팅 수행(1일 4시간 4일, 총 16시간)
⑥	컨설팅 완료	- (컨설턴트→센터) 컨설팅 완료보고서 제출 - (센터→소공인) 컨설팅 만족도 조사 실시

※ 세부 추진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

라. 지원 제외 대상
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, 임금체불 업체는 지원 불가
- 사업 선정통보 후 기한 내 컨설팅이 완료되지 않거나, 선정통보 이전에 선 진행한 컨설팅 건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
- 사전 변경 승인 없이 컨설턴트를 변경 및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지원 불가
- 부적격 등 센터 판단에 의거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불가

마. 지원 유의사항

- 중도 포기 업체는 포기 확정일자부터 2년간 센터의 사업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
- 컨설턴트 최종 선정 후 2개월 이내 컨설팅 완료하여야 함

3. 신청 안내

가. 신청 방법 :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접수

나. 신청 기간 : 연중상시 (사업비 소진 시까지)

다. 신청 서류

제출서류	
①	[서식1] 사업신청서 1부
②	[공통1] 개인정보 동의서(공단, 상공회의소) 각 1부
③	[공통2]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④	[공통3] 중소기업 확인서 1부(소상공인확인서-소상공인 명시 必)
⑤	[공통4]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1부(23~24년)
⑥	[공통5] 국세 완납증명서,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
⑦	[공통6] 주업종명(업종코드) 조회 화면 인쇄본(서명 필수) 각 1부
⑧	[공통7]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1부
⑨	[서식2] 추진 계획서 1부
⑩	[서식3] 협약서 1부
⑪	[서식4] 컨설팅 사전진단 보고서 1부
⑫	[서식5] 지원사업 대상선정 평가 기준표 1부

* ⑧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는 화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→새소식→소공인특화지원센터→상단 게시물 **『[중요] 소공인 주업종 확인 서류 준비 매뉴얼』**을 확인하신 후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접수 및 문의처

담당자	연락처	F.A.X.	E-mail
양세현 매니저	031-354-3641	031-354-3642	hsmfsc@gmail.com